

제 100호

행정명령 (EXECUTIVE ORDER)

법규의 특정 조항의 정지 또는 수정의 지속

본인은 2012년 10월 26일에 뉴욕주의 모든 62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을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47호를 발령하였습니다.

행정법 제29-a조는 법령, 지방법, 조례, 명령, 규칙 또는 규정의 조항, 또는 그 일부를 준수하는 것이 재난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, 법령, 지방법, 조례, 명령, 규칙 또는 규정, 또는 그 일부의 정지, 변경 및 수정을 허락하고 있습니다.

본인은 2012년 10월 31일에 교통 인프라 복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정지하는 행정명령 제50호를 발령하였습니다.

본인은 2012년 11월 20일에 주 계약 및 주 시설물 수리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정지하는 행정명령 제79호를 발령하였습니다.

본인은 2013년 4월 24일에 Bronx, Kings, Nassau, New York, Orange, Putnam, Queens, Richmond, Rockland, Suffolk, Sullivan, Ulster 및 Westchester 카운티를 위해 행정명령 제47호에 의해 발령된 재난 선포를 90일간 지속하기 위해 그리고 행정명령 제97, 94, 91, 87 및 81호에 의해 지속된 행정명령 제50 및 79호에 의해 명령된 특정 법규 및 규제 조항의 정지 및 수정을 지속하기 위해 행정명령 제98호를 발령하였습니다;

행정법 제29-a조에는 법률의 정지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모든 관련 사실 및 형편을 재고려하여 정지를 추가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;

이제, 그러므로 본인 **ANDREW M. CUOMO** 뉴욕주 지사는 행정법 제2-B조의 제29-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, 그리고 모든 관련된 사실 및 상황을 재고려한 후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:

1. 행정명령 제98호가 지속됨에 따라 행정명령 제79호에 의해 명령된 법률 조항의 정지 및 수정은 2013년 6월 23일까지

지속됩니다;

2. 행정명령 제50호에 의해 명령되고 행정명령 제98호에 의해 지속된 법규 조항의 정지는 2013년 6월 28일까지 지속됩니다.

이천십삼년 오월 이십사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
및 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